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7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정호·최기상·허종식

정성호 • 이연희 • 박희승

이훈기 • 박 정 • 임미애

박해철 • 어기구 • 유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위탁거래의 분 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 가 필요 없으며, 판사·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 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 성·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
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	회의 설치) ①
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	
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제2</u> 조제5호에도 불
	구하고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u>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